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구축협의회의 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안

1. 제정이유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구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구축협의회를 설치함(안 제1조).

나. 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구축협의회는 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 관련 제도와 관계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구축협의회는 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국무총리 훈령 제426호

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구축협의회의설치 및 운영에관한규정안

제 1 조 (협의회의 설치) 위성측위시스템(위치조사용 인공위성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수신한 후 위치를 확인하는 체계를 말한다)의 기준망(이하 "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이라 한다) 구축 운영과 관계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구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2. 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의 구축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 관련 상시관측소의 설치 운영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의 효율적인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당해 기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제외한다)중에서 1인씩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당해 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을 제외한다)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인의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간사) ①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준비, 회의록작성 비치 및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 등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안건의 제출) 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개최 30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 8 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담당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9 조 (회의결과의 처리) 협의회가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회의결과를 각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